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15132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. 12.

제안자 :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가. 심사 경과

의안명	대표발의자	발의일	경과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0558호)	이학영	2024. 6. 17.	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전체회의(2024. 9. 9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3237호)	김승수	2024. 8. 27.	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8차 전체회의(2024. 11. 21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8836호)	김형동	2025. 3. 12.	제427회 국회(임시회) 제3차 전체회의(2025. 7. 18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10761호)	한정애	2025. 6. 12.	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6차 전체회의(2025. 11. 14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

나. 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 11. 20.)에서
이상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
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, 제429회 국회(정
기회)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(2025. 11. 24.)에서 이
를 심의·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현행법은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계 유입 여부에 대한 조
사 및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와 환경 감시 체
계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,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누적 관리·
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또한, 낙시금지·제한구역의 경우 지정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여건
변화에 따른 변경·해제나 주기적 재검토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제도의
탄력적 운영이 어려우므로, 그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.

아울러,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
이행하였으나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경우 조업정지 처
분의 법적 상한이 없어 제재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6개월로 명확히
정할 필요가 있으며, 과불화화합물(PFAS), 잔류성유기오염물질(POPs) 등
신종오염물질에 대한 정의와 지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수
질위해 요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므로, 이를 ‘관찰물질’로 기후에너지환경
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도록 하여 수질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 폐기물의 하천·호소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, 그 결과를 누적 관리하며 공개하도록 함(안 제16조의2).
- 나. 낚시금지·제한구역에 대해 지정뿐 아니라 변경·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, 정기적으로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(안 제20조).
- 다.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, 조업정지 처분의 상한을 6개월로 설정함(안 제40조).
- 라.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과불화화합물(PFAS), 잔류성유기오염물질(POPs) 등 관찰물질을 지정·고시하도록 함(안 제9조의5 신설).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5(관찰물질의 지정 및 공개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

· 호소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찰물질의 명칭, 지정 이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찰물질의 지정·조사와 고시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의2제1항 중 “하천·호소”를 “매년 하천·호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절차·방법”을 “절차·방법, 제3항에 따른 관리·공개”로 한다.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누적적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

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정기적으로 지정 사유 또는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재검토 기간, 지정·해제·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0조 중 “해당”을 “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”으로 한다.

제82조제3항제2호 중 “제20조제2항”을 “제20조제6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
제4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) 기후에너지
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의 개
정규정에 따른 하천·호소 등에 대한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
의 유입 여부 조사를 하여야 한다.

제3조(낙시금지구역 또는 낙시제한구역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) 이
법 시행 당시 낙시금지구역 또는 낙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재검
토 기간이 경과한 구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재
검토하여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제9조의5(관찰물질의 지정 및 공개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·호소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찰물질의 명칭, 지정 이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찰물질의 지정·조사와 고시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제16조의2(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) ① 환경부장관은 <u>하천·호소</u> 등에 대하여 「원자력안전법」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.	제16조의2(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) ① ----- <u>매년 하천·호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② (생 략)

<신 설>

③ 제1항에 따른 조사 절차·
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
부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(낙시행위의 제한) ① (생
략)

<신 설>

<신 설>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
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누적
적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
개하여야 한다.

④ -----절차·
방법, 제3항에 따른 관리·공개
-----.

제20조(낙시행위의 제한) ① (현
행과 같음)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
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
제1항에 따라 낙시금지구역 또
는 낙시제한구역으로 지정한
때에는 정기적으로 지정 사유
또는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해
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
재검토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
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
제2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해
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
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
지정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
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
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을 변경

<신 설>

<신 설>

② · ③ (생 략)

제40조(조업정지명령) 환경부장관
은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
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
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

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면관리
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
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
· 군수 ·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
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
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
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
상실된 경우 또는 지정 목적
달성을 위하여 구역의 변경이
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
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
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
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
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
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
한구역의 재검토 기간, 지정 ·
해제 ·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
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 · ⑦ (현행 제2항 및 제3항
과 같음)

제40조(조업정지명령) -----

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제 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<u>해당</u> 배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<u>6개월</u> 이내 <u>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</u>----- ----- -----.
제82조(과태료) ①·② (생략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(생략) 2. <u>제20조제2항</u>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3. ~ 6. (생략) ④ (생략)	제82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제20조제6항</u>----- ----- ----- 3. ~ 6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